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84

발의연월일: 2024. 8. 28.

발 의 자:김현정・이기헌・박해철

이재관 • 박상혁 • 박정현

박균택 • 정진욱 • 이개호

박홍배 • 박희승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아니면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·경영할 수 없 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2016년 91개소였던 사립 특수학교는 2024년 현재 90개소로 줄었고 반면, 특수교육대상자는 87,950명에서 115,610명으로 늘어나 특수학교배치율은 2016년 28.95%에서 2024년 25.97%로 감소하였음.

이처럼 최근 심각해지는 특수학교 공급부족 현상을 고려할 때 학교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경영자가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설립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감독·규제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확대해서 사립 특수학교 경영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 고 있음.

이에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사립 특수학교를 설치·경영할 수 있도록 법적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특수학교의 설립을 활성화시켜 특수학

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초등학교・중학교・고등학교・대학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3조(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	제3조(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		
수 없는 사립학교 등) 학교법	수 없는 사립학교 등)		
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립학			
교를 설치 · 경영할 수 없다. 다			
만,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52조			
제2항에 따라 산업체가 그 고			
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			
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			
•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			
아니하다.			
1. 초등학교・중학교・고등학교	1. 초등학교・중학교・고등학교		
· 특수학교 · 대학	<u>· 대학</u>		
2. ·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		